

[별표 15] <개정 2004.4.20, 2006.5.3>

가스용품의 합격표시(제39조 관련)

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인 또는 검사필증을 붙여야 한다. 다만,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배관용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.



바깥지름 : 5mm

2. 압력조정기·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·콧·전기절연이음관·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·이형질이음관·콧카플러는 가목의 검사필증, 강제혼합식가스버너·연소기·연료전지는 나목의 검사필증, 고압호스·염화비닐호스·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목의 검사필증을 부착한다.

가.



크기 : 15mm×15mm

은백색바탕에 흑색문자

크기 : 30mm×30mm 다만,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20mm×20mm로 한다.

나.



은백색바탕에 흑색문자. 다만, 업무용 대형 연소기·온수기·온수보일러·난방기·오븐렌지·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.

다.



크기 : 20mm×16mm

황색바탕에 흑색문자. 다만, 호스제조공정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 및 바탕색을 그 호스 규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.